

부산광역시사하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안사유

- 가. 근거법인 「청소년기본법」 전문개정(2004. 2. 9공포, 2005. 2. 10 시행)으로 인해 조례제정의 근거 조항인 동법 제22조가 제27조로 개정되었고,
- 나. 청소년지도위원 인원수 부족에 따른 활동의 어려움으로 각 동 협의회별 인원수 상향조정 건의 및 청소년보호·육성활동의 효율을 기하기 위함

### 2. 주요골자

- 가. 조례 근거조항 수정 : 제22조 ⇒ 제27조(안 제1조, 안 제2조제1항)
- 나. 지도위원 수 조정 : 10인 ⇒ 15인(안 제2조제2항)
- 다. 위원증 기재사항 수정 : 제22조 ⇒ 제27조(안 별표)

### 3. 관계법령

「청소년기본법」 제27조

#### 4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안사유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조례 재정의 근거법인 근거법인 「청소년기본법」 전문이 개정(2004. 2. 9공포 2005. 2. 10시행)됨에 따라 그 근거조항이 변경(제22조 →제27조)되었기에 변경된 조항(제27조)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과
- 각동별 지도위원을 10인에서 15인으로 증원코자 하는 것인데
- 본 개정사항이 구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입법예고의 절차를 결한 문제가 있음
- 본 조례 개정안중(안 제2조) 각동의 청소년 지도위원수를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5명 증원하여 청소년을 보다 능률적으로 선도하려는 좋은취지가 주민의 의견 수렴없이 실무진의 자의적 판단에 의거 진행되어도 좋을지 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”를 참조하여 깊이 생각한 후 의결해야 할것으로 생각됨

2005. 4.

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성